

1

가입기준은?

1 대상 건설현장

-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
- 전기·정보통신·소방시설·문화재수리공사 현장



2 가입대상 근로자

- 건설공사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



3 보험료 부담

- 9%의 보험료를 근로자 4.5%, 사용자 4.5% 부담
- *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
- 사후정산요율 인상으로 사업장 부담 완화
- * 국민연금 2.49% → 4.5%, 건강보험 1.70% → 3.12%
- ☞ **(사후정산제도)** 건설업체가 직접노무비에 대한 4대 보험료 특히, 국민연금·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를 발주기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



4 적용시기

- 2018.8.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시행 (단,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는 2020.7.31까지 2년간 유예)



2

가입자 혜택은?

■ 노령,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 지급

| | |
|--------------|---|
| 노령연금 | 10년 이상 가입하고, 62세*가 된 때 지급 * '53년생부터 출생연도별로 1~5세 상향 조정, '69년생부터 65세에 지급 |
| 분할연금 |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 |
| 장애연금 |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(였던 자)에게 질병·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지급 * 장애1~3급은 기본연금액의 100~60%를 연금으로,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%를 일시금으로 지급 |
| 유족연금 |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(였던 자) 또는 노령·장애연금(2급이상) 수급권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|
| 반환일시금 | 60세 도달, 사망, 국적상실·국외이주 시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|

■ 연금지급 현황

- 62세 이상 10,181천명 중 4,489천명이 연금 수급(수급률 44.1%)

(2019. 12월 기준)

| 구 분 | 전체 | 노령 | 장애 | 유족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|
| 수급자 수(천 명) | 4,961 | 4,090 | 78 | 793 |
| 지급액(억 원) | 217,116 | 190,693 | 3,787 | 22,636 |
| 수급자 비율(%) | 100 | 87.8 | 1.8 | 10.4 |
| 평균 연금월액(천 원) | 471 | 527 | 456 | 285 |
| 최고 연금월액(천 원) | 2,121 | 2,121 | 1,647 | 1,077 |

*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은 당해 연도 기준, 평균 및 최고 연금월액은 당월 기준임

3

가입신고 절차는?

| 구 분 | 신 고 사 항 등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사업장 적용 신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- 당연적용해당신고서,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 제출 • (EDI로 신고)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는 인근 국민연금지사에 우편, FAX, 방문하여 공통신고하고, 성립이후부터 반드시 EDI로 신고 ※ EDI 홈페이지(http://edi.nps.or.kr)에서 회원가입 후 가입자 변동신고 및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|
| 가입자 신고 (취득/상실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입자 취득신고 :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• 가입자 상실신고 : 퇴사하거나 8일미만 근무하게 된 때 • (EDI로 신고) 다음달 5일까지 신고 |
| 보험료 고지 (일괄경정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월 15일까지의 (국민연금공단에서) 보험료 산정 및 (건강보험공단에서) 매월 말일까지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 - 단, 자격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익월 5일까지 신고 후 일괄경정 금액으로 납부 |
| 보험료 납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납부기한 : 매월 10일 |



- ☞ **(두루누리보험료지원)** 사용자(법인 대표이사 포함)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고시소득(20년 기준 215만 원)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30~90% 지원(건설현장의 경우 본점과 건설현장 모두 10인 미만의 경우에만 지원)